

# 의 결



A ABC

# 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 - 788호

의 안 명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결정일 2022. 11. 7.

## 주 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확인서 발급절차 개선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다.

## 이 유

별지와 같다.

A B C  
- 1 -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11월 7일

위 원 안 성 육

위 원 김 태 규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강 재 영

위 원 박 계 육

위 원 박 상 희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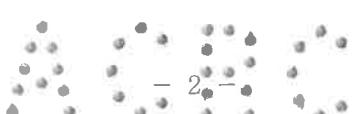
위 원 손 난 주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묵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육



별 지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

202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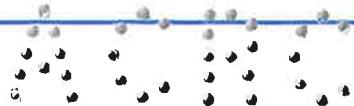


## 목 차

I . 추진개요 .....	1
II . 현 황 .....	2
III. 문 제 점 .....	4
IV. 개선방안 .....	6
V. 조치사항 .....	9

<붙임>

1. 경력신고·확인서 발급 관련 입법례 .....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확인 관계 법령 .....



# I . 추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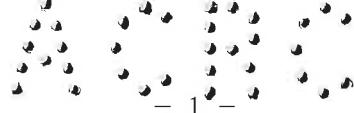
---

## □ 추진 배경

-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사한 회사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경력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민원 빈발
  - 경력확인서(서식)에 민간업체 대표자에게 위축·거부감을 주는 문구를 사용하여 경력확인서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 사례 발생
  - ※ 퇴사한 회사에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제출서류에 불필요한 문구로 확인서를 받기 위해 회사와 싸워야 하고, 발급자에게 형사처벌을 운운하는 위협적인 문구를 사용하니 근로자가 확인서를 받기 위해 이직한 회사에 눈치를 봐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으니, 경력확인서 양식을 변경해 달라 (국민신문고, '22.9.)
  - 「기계설비법령」에 경력확인서 의무발급 또는 미발급에 따른 제재 규정 부재로 퇴직 후 3년 초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 본인은 s-oil에 2017.2.6.까지 근무한 후 퇴사했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받기 위해서 s-oil에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퇴사한 지 3년이 넘어 발급을 못 해준다는 답변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건강보험 이력 등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 증명서로 경력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 (국민신문고, '21.9.)
- 경력확인서 신청·발급에 따른 근로자와 발급자 간 분쟁 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근로자가 경력 확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 추진 경과

- (~09.01.) 제도개선 건의 민원 접수
- (~09.06.)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안) 마련
- (~09.19.) 제도개선(안) 관계기관 협의
- (~11.07.) 소위원회 및 전원위원회 상정·의결



## II. 현황

### □ (근거) 「기계설비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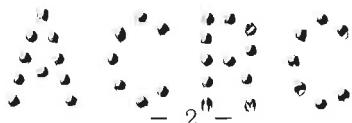
- 「기계설비법」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5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3(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의 결정,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관리, 증명서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하여 규정

### □ (정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일정 학력·경력 등 자격을 갖추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점검, 관리, 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어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기계설비법」 2018.4.17. 제정, 2020.4.18. 시행)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 기준 >

등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건설기술인
1. 특급	(보유 시)	10년 이상	10년 이상	13년 이상	(특급) 10년 이상
2. 고급		7년 이상	7년 이상	10년 이상	(고급) 7년 이상
3. 중급		4년 이상	4년 이상	7년 이상	(중급) 4년 이상
4. 초급		(보유 시)	(보유 시)	3년 이상	(초급 보유 시)
5. 보조	산업기사 보유, 기능사 보유 및 실무경력 3년 이상, 인정기능사 보유 또는 기계설비 관련 학위 취득·학과 졸업 및 실무경력 5년 이상				



- (선임목적)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매년 기계 설비 안전, 성능확보 등을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도록 기계설비를 유지관리하도록 의무부여

\* 등록현황 : '19) 7,381개 → '20) 7,381개 → '21) 7,381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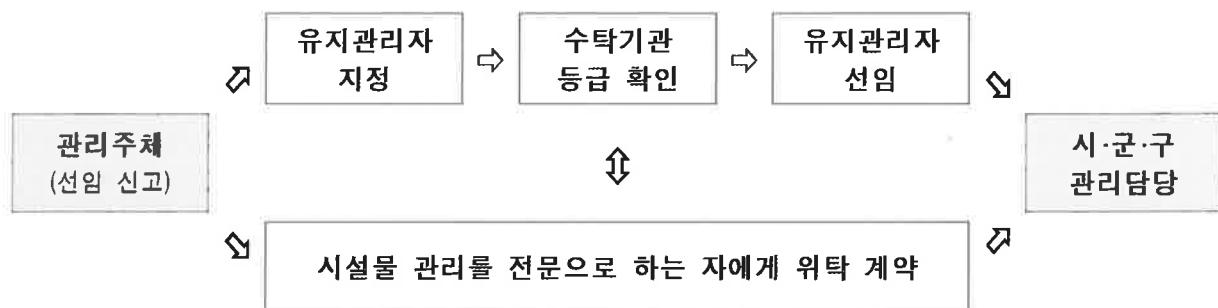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현황 >

합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임시
33,615명	9,485명	2,143명	2,285명	1,774명	3,094명	14,834명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과 선임 자격 >

선임대상	선임 자격 및 인원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책임(특급)유지관리자 1명, 보조유지관리자 1명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책임(고급)유지관리자 1명, 보조유지관리자 1명
▶ 연면적 1.5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책임(중급)유지관리자 1명
▶ 연면적 1만㎡ 이상 1.5만㎡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책임(초급)유지관리자 1명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도 >



- (경력신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근무처 및 경력 등 관련 자료를 제출·신청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음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확인 절차도 >



### III. 문제점

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이하 '근로자') 경력확인서 발급 과정이 근로자 및 민간 업체 대표자(이하 '발급자') 등에게 과도한 불편·부담을 초래

- 근로자가 과거 근무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자의 날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나,
- 경력확인서(서식)상의 불필요한 문구\*로 발급자의 확인서 발급 위축·거부로 인해 근로자와의 분쟁 발생의 원인 제공

\* 발급자 날인란에 "이 증명이 허위 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 행사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 < 경력확인서(서식) 관련 민원 사례 >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 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안" 별지 제2호서식 경력확인서의 대표자 직인란을 보면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하며 이 증명이 허위 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 행사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으나, 작성하는 사람도 "신청인"이고, 확인서가 필요한 사람도 "신청인"인데 왜 경력 확인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문구를 넣어 업체에서 부담스러워하거나 확인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일을 초래니, 법적 효력도 불투명하고, 업체에서 부담을 느끼는 문구를 삭제해 달라 (국민신문고, '21.2.)
- ▶ 상기 본인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퇴사한 회사에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제출서류에 불필요한 문구로 확인서를 받기 위하여 회사와 불필요하게 싸워야 하는 등 문제가 발생. 경력확인서(양식)에 사용자에게 고지한다는 내용이 "확인서를 써주는 경우 문서 위조 범으로 처벌되니 웬만하면 써주지 말라고 읽히니 어떤 사용자가 쉽사리 확인서를 내어주겠습니까?"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을 운운하는 등 위협적인 문구를 고지하니 신청인이 확인서를 받기 위해 이직한 사용자의 눈치를 봐야 하고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등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구직 신청인의 입장에서 경력확인서 양식 변경해 달라 (국민신문고, '22.8.)

-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유사·동일한\* 경력확인서(서식)보다 발급자 등에게 과도한 불편·부담 초래

- \* 경력확인서(서식)상의 발급자 “날인” 문구 내용 : “① ~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② ~의 근무 경력을 확인합니다, ③ ~의 근무기간 및 경력사항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로 기재하여 경력확인서 발급에 따른 발급자 부담을 최소화

## [2] “기계설비법령”에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경력확인서 이외 근로자가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이 부재

- 업체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나, 회사와 근로자 간 불화로 인한 퇴직 또는 퇴직 후 3년이 초과한 경력에 대해서는 업체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경력확인서를 발급(미발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규정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16조)

### < 경력확인서 발급 기한 관련 민원 사례 >

- ▶ 본인은 s-oil에 2017.2.6.까지 근무를 했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받기 위해서 s-oil에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확인서 발급을 못 해준다는 답변을 받아 고심 끝에 신문고 문을 두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답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에 퇴직 후 3년이 경과 하였다면 안타깝게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증명서 미 발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제재는 어려울 (국민신문고, '21.9.)
- ▶ 유지관리자 경력 수첩을 발급받기 위해 전 직장에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측에선 근무자의 퇴직이 오래되어 발급이 불가하다고 함.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증명서' 발급 규정에 대해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퇴직 3년 이내에 요구할 때는 즉시 발급하고,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 하지만 기계설비법에서 요구하는 중급기술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무려 10년(자격취득 전 경력 70% 인정)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음. 결국 전 직장에서 경력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근로자는 강제퇴직 또는 취업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업에 큰 피해가 발생 (국민신문고, '22.5.)

- 근로자가 특급기술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5~20년 이상의 경력확인이 필요하나, 퇴직 후 3년 초과 경력을 인정받는 데 제한\*이 있음

- \* 근로자가 업체에 경력확인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하고 있어,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후 근무 경력만으로 특급기술 자격을 인정받으려 하는 경우 업체가 퇴직 후 3년 초과 경력에 대한 경력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 IV. 개선방안

### ① 경력확인서 신청·발급 과정의 분쟁 요소 차단

○ 근로자 및 발급자의 불편·부담 최소화를 위해 경력확인서(서식) 개정

※ (현행) “이 증명이 허위 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 행사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 (변경)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현행	개선 (예시)
<경력확인서>	<경력확인서>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 행사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회사명	회사명
대표자	대표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귀하	(직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귀하

※ 경력확인서(서식) 관련 유사 입법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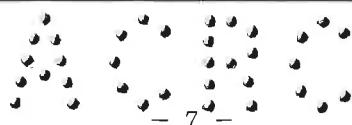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 「엔지니어링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 「수목진료 관련 및 직무분야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②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 (정책제안)

- 근로자의 경력(퇴직 후 3년 초과) 인정 서류에 경력확인서 이외 공적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또는 「기계설비법령」에 경력 확인서의 의무발급 및 미발급에 따른 제재 부과 규정 마련
-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산업재해보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근무사실 및 근무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유사 입법례” 붙임1 참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현행	개선 (예시)
제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신고) ①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신고) ① (현행과 같음)
2.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또는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 취득 · 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 · 출력물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근무경력 관련 증명 서류 ..... .....
	2. (현행과 같음) <u>&lt;삭제&gt;</u> ② (현행과 같음)



⇒ 「기계설비법」 개정

현행	개선 (예시)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 ⑧ (생략) <u>&lt;신설&gt;</u>  ⑨ ~ ⑬ (생략)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u>⑨ 제8항의 신고를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근무처(민간업체 대표자 등)에 퇴직한 후라도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u> ⑩ ~ ⑭ (현행과 같음)
제30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u>&lt;신설&gt;</u>  5. ~ 7. (생략)	제3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19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게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u> 5. ~ 7.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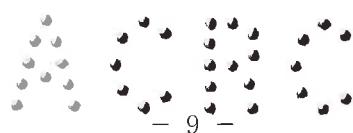
※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교 졸업 후 현장 근무 경력만으로 건설기술인 자격(특급 유지관리자)을 인정받는 경우 15~20년 이상의 현장 근무 경력확인서가 요구되어 안정적인 경력확인서 발급을 위해 「기계설비법」에 근거 마련이 필요

## V.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과제명	조치 사항	조치기한
① 경력확인서 신청· 발급 과정의 분쟁 요소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근로자 및 발급자의 불편·부담 최소화를 위해 경력확인서(서식) 개정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 인정 등에 관한 기준」[별지 제2호서식] 개정</li></ul>	2023.06.30.
② 근로자가 안정적 으로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근로자의 경력(퇴직 후 3년 초과) 인정 서류에 경력확인서 이외 공적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또는 “기계설비법령”에 경력확인서의 의무발급 및 미발급에 따른 제재 부과 규정 마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 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또는 「기계설비 법령」 개정</li></ul>	정책제안



**붙임1****경력신고·확인서 발급 관련 입법례****◆ 경력확인서(서식)****문화재수리기술자 경력증명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제출인  (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증명사항	재직기간		소속 및 직위 (구체적으로 적을 것)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위 작성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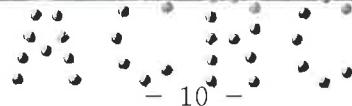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직인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

### I.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5조의4(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경력

· 학력 · 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 등 확인서.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2. ~ 6. (생략)
- ② ~ ⑧ (생략)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서류라 함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세부 경력내용서 및 별표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생략)

[별지 제1호서식]

### 문화재수리기술자등 세부 경력 내용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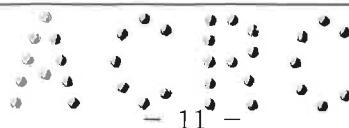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자
------	-----	-----

#### 문화재수리기술자등 인적사항

경력 신청인	①성명	(서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자격 종류		⑥자격번호	

#### 소속기간(문화재수리업자등 소속기간)

구분	회사명	대표자	근무기간	문화재수리업 등의 종류	문화재수리업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						



## 문화재수리기술자등 세부 경력 내용서

3					
4					
5					
6					

### 현장경력(문화재수리등 참여기간)

구분	사업명	사업비 (천원)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자	현장 주소
1						
2						
3						
4						
5						

위 문화재수리기술자등 세부 경력 신고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별표1]

###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 증빙서류(제4조 관련)

1.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 가. 문화재수리업자등 소속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 하나
  -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징수의무자의 직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 4)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 사본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폐업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징수의무자의 직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사본의 소득 금액이 일치한 자에 한한다)
  -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근무경력 관련 증명 서류(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나. 문화재수리등 참여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록의1) 서류로서 현장명과 참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2)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다음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부터(다)까지의 서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에 한한다)
(가)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나)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다)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라)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격증에 기록된 현장경력
3)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 설계도서(참여 명단이 명시된 것에 한한다)
4) 감독공무원 임명공문서 또는 근무부서 업무분장 공문서 등 관련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 2.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가. 문화재수리업자등 소속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제1호가록에 따른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문화재수리등 참여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1호나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언론 기사(참여 명단이 명시된 것으로 한한다)
3) 수리 현장 사진(본인과 수리현장이 확인된 것으로 한한다)
4) 노임 입금 통장 내역(해당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 현장대리인 명의로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 한한다)

II.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경력등의 확인서류) ① 규칙 제72조제1항에 따른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2. 경력증명서(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

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산재재해보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서

나. 근로계약서 등 근무사실 및 근무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인사기록부(해당 재직기간 내에 국민연금 등을 가입하지 않아 가록의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3. ~ 4. (생략)
- ② ~ ③ (생략)

## III.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① 법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간정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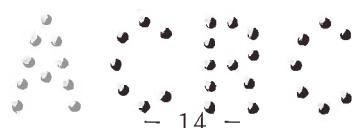
술자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확인서[공간정보사업의 발주자, 관계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2. ~ 5. (생략)
6.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생략)
- ② ~ ③ (생략)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신고) ① 규칙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근무처 또는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
  -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자격취득 · 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 · 출력물 중 어느 하나 (사본을 포함한다)
  - 나. 4대보험 자격취득 · 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으로 한정 한다)
  -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사본(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
  - 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사본(가목부터 다목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한다.)
  - 마.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다만, 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 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사본을 포함한다)
  - 사.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 사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자에 한한다)
2. ~ 3. (생략)
- ② ~ ⑦ (생략)



### 「기계설비법」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 ⑦ (생략)

⑧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근무처 · 경력 ·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 · 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신청하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관계 기관 · 단체의 장과 관리주체 및 신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소속된 기계설비 관련 업체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⑪ ~ ⑬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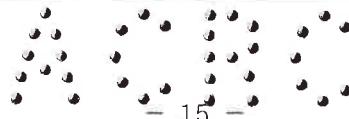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① ~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 경력 ·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 · 관리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3.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을 위한 근무처 및 경력등과 유지관리교육 결과의 확인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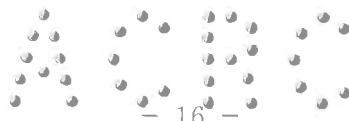
## 「기계설비법 시행 규칙」

제8조의3(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 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법 제19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근무처 · 경력 ·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7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경력 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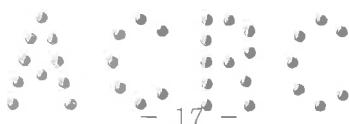
1. 근무처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3. 졸업증명서
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가로 2.5센티미터 × 세로 3센티미터)
- ②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법 제19조제8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8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③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④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의9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 ⑤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⑥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5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1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신고) ① 「기계설비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경력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서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 하나
  2.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
  4.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한다)
  5.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 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6.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7.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에 한한다)
   
 ③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의 사유로 사용자(대표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부도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2.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포함한다)
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5.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의 업종 및 등록 유지기간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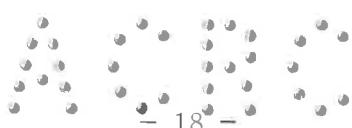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확인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별	
소속회사	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근무경력				
연 번	근무기간 근무처(건축물명)	담당업무[ ]설계 [ ]시공 [ ]감리 [ ]유지관리 [ ]성능점검 담당업무[ ]설계 [ ]시공 [ ]감리 [ ]유지관리 [ ]성능점검 담당업무[ ]설계 [ ]시공 [ ]감리 [ ]유지관리 [ ]성능점검	주소	
「기계설비법」 제1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확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u>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번조, 동행사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u>				
회사명 대표자		년      월      일 (직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귀하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제9항, 제76조의 3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 4.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정 본 입 니 다.

2022. 11. 8.

국 민 권 익 위 원



A O N C